

#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 전문가 회의 결과

## I. 회의 개요

1. 일자 및 장소 : 2007. 12. 3~7, 제네바(ILO)
2. 참가국가 및 기관 : 미국, 캐나다 등 13개국 정부기관 전문가와 ILO, FAO 등 5개 국제기구, 고용자그룹(6개국), 노동자 그룹(3개국)
3. 참석자 : 5급 흥병석
4. 회의 안건
  - ISCO-08 개정안 검토를 위한 다자간 회의
    - 다양한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한 국제분류 개정안 검토
  - ISCO-08 개정 기술소그룹 전문가 회의
    - 개념 틀, 구조 등 개정안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적용상 문제점 검토

## II. 회의 배경

- 2003년 제 17차 노동통계에 대한 국제컨퍼런스 결의안에 따라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작업을 착수
  - 현재까지 5차례 전문가회의 개최(2005년 12월 1차 회의 개최)
- 이에 따라 ILO에서는 2007년 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2010년에 각국에서 센서스에 적용 권고를 위해 ISCO-88을 업데이트
- 전문가 그룹 회원국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중국, 러시아, 영국, 스웨덴, 바바도스, 보스니아 10개국이 참가
- 이번 회의는 각 국의 고용자그룹, 노동자 그룹, 전문가 그룹이 함께 모여 그동안 업데이트했던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성격의 미팅임

### Ⅲ. 개정 내용에 대한 토의 및 결정사항

#### 1. 기본 개념 틀 관련 사항

- ISCO-88을 위해 채택되었던 개념 틀과 관련된 기본사항은 크게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변경사항은 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직능수준의 개념을 적용할 때 “요구되는 공식교육 수준”보다 “수행되는 업무의 특성”에 중점을 둔 것임
  - ※ 이러한 접근방법이 유용하다는 데 참가자들이 동감

#### 2. 개정 전반에 대한 개관

-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폭넓은 사용으로 인한 관련 직업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고 여성 규모가 큰 여성우월적인 직업과 비공식부문에서의 직업을 분류에 반영하였으며 회의 결과 분류항목의 최종 증감 내역은
  - 중분류 변경(28개 ⇒ 42개) : 대분류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대분류 8 기계조작 및 조립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분류가 증가  
이중 대분류 9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이 증가
  - 소분류 변경(116개 ⇒ 128개) : 대분류 7 기능원, 대분류 8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에서 크게 감소하고 대분류 3 준전문가를 제외한 모든 대분류에서 중분류 수 증가.
  - 세분류 변경(309개 ⇒ 436개) 대분류 6, 7, 8에서 감소하고 그 외 모든 대분류에서 증가
-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분류 변화를 반영한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위의 특정 개정 내용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함.

- 기준이 완전히 바뀌거나 명칭변경, 항목 통합, 신설된 분류들에 대하여 분류별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하고 색인어를 보완하여 더 명쾌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 ISIC-08이 전면 개정이라기보다는 업데이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카테고리별 본문 해설에서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분류 1 매니저와 다른 대분류에 포함된 매니저와 유사하지만 매니저가 아닌 분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설명을 해 줄 것을 강조
- 특히 Shopkeepers와 숙련공(Artisan)같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만 관리책임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적절한 분류기준에 의한 분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ISCO-08 서문에 대분류 1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세부적인 설명과 다른 대분류와의 구별(타 분류와의 관계)을 위한 자세한 설명을 서문에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
- 감독자와 이에 상응되는 관리자 그룹 그리고 감독을 받는 작업자 사이의 구별을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됨. 대분류 1과 타 대분류의 명확한 구별을 위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간단한 기준과 해결방안이 제시됨

### 3. 변경 주요내용 검토

- 위에서 언급한 타 분류와의 관계 문제에 덧붙여서 대분류 1에 대하여 타이틀이 길고 부담이 되는 문제가 제기됨. 특히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됨.

- 숫적으로 미미한 직업들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할 때 포함되는 내용들과 실제 다른 의미를 주는 타이틀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 대분류별 조정 결과 >

#### □ 대분류 1 관리자, 고위관료 및 입법가

- 토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특정 경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분류 1211 법인서비스관리자를 삭제하고 1219 그밖에 분류되지 않은 기업서비스 관리자를 신설
  - 소분류 121에 별도로 명시된 다른 세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소분류 121에 속해있는 다른 직업뿐만 아니라 1211에 애당초 포함되도록 의도했던 직업들을 함께 조정

#### <기존>

- . 121 기업서비스 및 행정관리자
- . 1211 법인서비스 관리자
- . 1212 금융관리자
- . 1213 인적자원 관리자
- . 1214 정책 및 기획관리자

#### <변경>

- . 121 기업서비스 및 행정관리자
- . 1211 금융관리자
- . 1212 인적자원 관리자
- . 1213 정책 및 기획관리자
- . 1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업서비스 및 행정관리자

- 대분류 1 그룹내에서 직능수준 기준과 구별의 역할이 그룹별 해설에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이러한 설명이 또한 직무유형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 대분류 1의 명칭이 영어로 “manager(관리자)”로 하고 불어와 스페인어로 각각 ---로 표기

## □ 대분류 2 전문가

- ISCO-88 에서 전문가 부문에 대한 주요 수정사항으로 고려되었던 것을 검토. 기술과 조직의 발달 결과 나타나는 전 세계 직무 내용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변화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ILO 대표부에서 설명

- 전문가 그룹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많은 부분에서 세부적인 정의 및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다음 분류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식

- 중분류 22 보건 전문가 : 이에 상응하는 중분류 33 보건준전문가는 보건 전문가와 직무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책임성이 덜 중요하고 판단범위나 업무에서의 제한된 영역을 가지므로 다른 직능 수준에서 고려됨

. 소분류 222 간호 및 조산 전문가는 322 간호 및 조산 준전문가와 상응됨.

- 소분류 223 전통 및 대체의학 전문가를 세분류에서 더 세분화하는 것은 유용하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사용되는 지식 및 기술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이를 세분하여 ISCO에 반영할 적절한 방법이 없음

※ 위 세분류는 3차시 우리나라에서 준전문가에서 분류된 전통의학 준전문가를 명칭을 동양의학 전문가로 변경하고 4차 회의시는 중국이 중국의학 전문가를 세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인도가 이를 반대하고 ILO 등에서 절충안으로 전문가를 신설하면서 명칭을 전통 및 대체의학 전문가로 한 것임

- 직업교육교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됨- 특히 이러한 직업이 서로 다른 형태의 교육기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러함. 직업교육교사는 각 국가마다 가르치는 과목과 시스템이 많이 다르므로 적절한 정의를 ILO에서 내려주어야 한다는 데 동감

※ 우리나라는 직업학교교사가 과목 및 교육 주체 등의 시스템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구별됨을 설명

- 세분류 2310 정보기술에 전문화된 교사와 2356 정보통신훈련원의 직무와 교육에서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 대분류 3 준전문가

- ILO 대표는 대분류 2 전문가에 대하여 제안되어 부분적으로 변경된 결과로서 준전문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경 제안을 설명. 또한 이 대분류에서 분류되어야 하는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직업이 있다는 직업세계에서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 서론에서 설명되었던 토론을 위한 한 가지 문제가 금융기관의 지사관리자의 직업임
  - 애당초 제안에서 금융기관 지사의 관리자는 3312 신용 및 대부 사무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직업에 대한 분류는 대분류 1 관리자에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되었으며 결론적으로는 세분류 1346 금융서비스 관리자를 신설하여 분류하도록 함
- 몇몇 전문가들이 정책, 종교관련 또는 문화관련 직업이 똑같은 중분류 34 정책, 기획, 사회, 문화 및 관련 준전문가에 분류하는 것이 ISCO의 많은 이용자들에게 놀랄만 한 일이라고 지적함. 특히, 이 그룹의 명칭이 나머지 직업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점에 대한 토론 결과로서, 세분류 3411 경찰(Police inspector and detectives)은 소분류 335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로 이동해야 한다고 함
- 농업준전문가는 세분류 3141 생명공학 준전문가(의료 제외)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세분류 3142는 농업준전문가로 명칭이 붙여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
- 잠정안 제안내용에서 5121 주방장에 대해서는 요리사와 같이 분류할 것인지 대분류를 달리하여 별도의 분류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대분류 3에서 별도의 세분류로 분류하기로 결정함
- 중분류 35 정보통신 준전문가에서 소분류가 351 정보통신기술 운영 및 활용지원 준전문가와 352 통신(communication) 준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히 함
  - ※ 우리나라에서 건의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콘텐츠를 구별하든지 직무형태를 고려하여 방송통신 기능공을 별도로 분류하든지에 대한 기준과 포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분류 352는 정보통신기술 측면과 이용자 지원측면에서도 구별이 어려우므로 352를 방송통신으로 한정하고 telecommunication과 방송으로 한정할 것을 건의하여 수용됨

#### □ 대분류 4 사무원

- 사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제안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으나 대분류 명칭 "Clerks"는 다시 바꾸자는 데 동의 ⇒ "Clerks support workers"

## □ 대분류 5 서비스 및 판매종사원

- ILO 지도부에서는 Sex workers의 분류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임을 지적. 이 직업은 이러한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 입법과 관리방식이 아주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류상의 어려움 따름. 따라서 ISCO-88의 기본분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추가분류를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
  - ⇒ 국가분류에서 별도로 분류를 하고자 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국제분류는 별도의 분류를 하지 않되 해당 국가에서 세분류 5186을 신설하여 분류하고 5169에서는 이를 제외
  
- 중분류 52 판매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중분류와 관계되는 다른 중분류의 경계를 명확히 할것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짐
  - 신설 : 5222 shop keepers, 소규모의 관리업무를 겸한 기타 소매운영자.
  
- 이 대분류에 대해 특수한 직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용되지 않으나, 이 대분류에 분류된 직업이 아주 제한된 인력관리 의무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 덧붙여서 판매활동에 대한 세팅이 중분류 52에 분류되는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특성이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됨. 자세한 설명이 이러한 직업들이 중분류 52내의 서로 다른 소분류와 세분류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직업들이 대분류 1, 3, 9에 분류되기 위해 판매와 관련된 직업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명확하게 해야 함

- 세분류 5121 주방장(chefs)가 많은 음식점과 유사한 사업체에서 요구되는 직능수준과 직무, 책임성이 서로 다른 관계로 일반 요리사(cooks)와 똑같은 대분류에서 분류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토론 결과 chefs는 대분류 3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음

※ 토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러시아 등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요리사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강력한 주장으로 일단 3으로 변경함

#### □ 대분류 6 숙련 농림어업 종사자

- 이 대분류에서는 제안사항에서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었지만 토의 과정에서 농업종사자 및 농장관리자 같은 직업에 대한 분류의 국제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분류에서보다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대규모 농장 및 사업체 생산관리자는 대분류 1 관리자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중분류 61 시장지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62 생계형 농업 및 어업종사자, 수렵원 및 채집원의 분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FAO, 러시아, 우리나라 등 많은 토의를 하였으나 결국 62는 국제표준산업류 자가소비용 가구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와 유사하게 분류한다면 성격상 별도의 대분류로 하여야 적절하나 대분류 9 단순노무자와 같이 분류하는 것보다는 대분류 6에서 시장지향형 숙련농림어업 종사자와 같이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선에서 어느 정도 토론이 마무리 됨
- 위와 같이 중분류를 2개로 나누면서 중분류 61 시장지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다시 직무형태가 약간 상이한 어업종사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2개의 중분류로 분리하고 하나는 시장지향 농림어업 종사자 다른 하나는 어업 및 수렵 종사자로 함.

- ILO에서는 생계형은 어떤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프리카 같은 전통방식에 의해서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는 중요하여 생계형을 세분하지 않으면 조사표에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지향형과 생계형을 중분류 하나로 합하고 소분류에서 구별하되 세분류를 좀 더 세분하는 방법을 제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세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

※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생계형 농업종사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이러한 분류코드는 필요 없으나 국제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생계형이 중요한 국가를 위해서 별도의 분류번호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의견 제시

종 전	변 경
6 숙련 농림어업 종사원	6 숙련 농림어업 종사원
61 시장지향 농림어업 종사원	61 시장지향 농림어업 종사원
611 시장원예 및 작물재배원	611 시장원예 및 작물재배원
612 동물사육원	612 동물사육원
613 복합농업종사원	613 복합농업종사원
614 임업 및 관련 종사원	62 시장지향 어업 및 수렵원
615 어업 및 수렵원	621 양식어업 종사원
62 생계형 농어업 종사원 및 수렵, 채집원	622 내륙 및 해양 어업종사원
621 생계형 농어업 종사원 및 수렵, 채집원	623 원양어업 종사원
	624 수렵 및 채집원
	63 생계형 농어업 종사원 및 수렵, 채집원
	631 생계형 농업 종사원(작물)
	632 생계형 농업 종사원(가축)
	633 생계형 농업 종사원(복합)
	634 생계형 어업, 수렵 및 채집원

- 대분류 9 단순노무자에 분류된 농림어업 노동자와 생계형 농림어업 종사자를 구별함에 있어 생계형은 직능수준으로 보아 대분류 9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직무 형태 및 직능수준과 또한 특수목적의 분류를 감안하여 대분류 6에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림

## □ 대분류 7 기능공

- 대분류 7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없었으나 일부 세세분류나 설명내용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 설명문을 작성할 때 다른 세분류 및 대분류 8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색인어를 예시로 들 때 이를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구별이 모호할 수 있는 “담배 등급원”은 소분류 7515 음식료품 등급 및 시험원으로 분류하고 7516 담배 준비 및 생산 제조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
  - 또 다른 예로 빌딩 트레이드는 직무형태를 고려하여 중분류 71과 소분류 711에서 타이틀에서 포함하지 말고 7411 빌딩 및 관련 전기기능공을 포함하여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 ⇒ 71 빌딩 및 관련 트레이드 종사원, 전기기능공 제외
  - “직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실제로 직물을 수공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의복과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직물이라는 명칭을 753 소분류 타이틀에서 제외하도록 결정
    - : 753 Textile, garment and related trade workers ⇒ Garment and related trade workers

□ **대분류 8 기계 조작 및 조립원**

○ 대분류 8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없었으나 일부 분류체계를 단순화함

- 소분류 821 조립원의 세분류 8212 전기장치 조립원과 8213 전자장치 조립원을 통합 ⇒ 8212 전기 및 전자장치 조립원
- 세분류 8214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8215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8216 종이판, 섬유 및 관련 제품 조립원, 8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원을 통합하여 기타로 분류

종 전	변 경
821 조립원 8211 기계 조립원 8212 전기장비 조립원 8213 전자장비 조립원 8214 금속,고무 및 플라스틱 조립원 8215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8216 종이판, 섬유 및 관련 제품 조립원 82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원	821 조립원 8211 기계 조립원 8212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원 82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원

□ **대분류 9 단순노무자**

○ 대분류 9에서는 숙련 농림어업 종사자와 생계형 농림어업 종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가 이루어짐. 생계형 농림어업 종사자를 대분류 9로 이동하여 분류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토의가 진행됨

- 그러나 많은 나라가 생계형 농업에 대한 통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지향형 농림어업 종사자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생계형 농림어업 종사자는 대분류 9에 분류되는 단순 농업노동자와 다르다고 함.
- 특히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도 생계형 농업에 대한 별도의 분류나 통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분된 통계가 필요하다고 함
- 그러나 시장지향형 농림어업 종사자와 생계형 농림어업 종사자가 직업에 있어서 기술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구별하는 경우 장소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하므로 9로 이동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설정한 ISCO 개념을 변경하지 않고 대분류 9로 분류하지 않고 대분류 6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음
- 대분류 9에서 세분류 9312 토목 엔지니어링 노동자와 9313 빌딩 건설 노동자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으나 요구되는 직능수준뿐만 아니라 환경 및 직업의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직무로 보아 그대로 유지
- ※ 9312 토목엔지니어링 노동자와 9313 빌딩건설 노동자는 직무형태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ILO등에서 구별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 미국 등에서는 통합 주장

□ 대분류 0 군인

- 대분류 0에 대한 특별한 제안이나 이의는 없었음

#### 4. 분류체계에 대한 변경 및 결의사항

- ISCO TSEG(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 기술전문가 그룹)은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를 대분류(Major group), 중분류(Sub-major group), 소분류(Minor group), 세분류(Unit group)로 하고 명칭은 ISCO-08로 함
- ISCO는 직업을 분류하며 “job”를 분류하며 job는 고용주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사람에게 의해서 수행되는 또는 수행되어야 하는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
- An occupation은 "주요 직무가 고도의 유사성으로 특징지워지는 job의 집합으로 정의됨. 한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job, 2차적인 job 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job을 통하여 직업과 연관됨
- job은 수행된 또는 수행되어질 업무의 형태와 관련하여 occupation에 의하여 분류됨. 대,중,소,세분류에 적용된 분류기준은 직업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능수준과 직무형태임.
- 직업분류에 의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각 국가는 직업정보의 국제적 활용과 비교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표준 직업분류 개정분류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각 국가는 각 국가분류에서 정의된 분류들이 어떻게 ISCO-08과 가장 잘 관련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ILO는 대,중,소,세분류의 정의를 포함하여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된 색인표를 출판하고
  - 각 국 및 권역별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훈련자료를 제공
  -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을 위해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ISCO-08를 국가분류에 맞게 효과적으로 개발 및 개선시킬 것을 보장

#### IV. ILO 향후계획(ISCO-08)

- 개정안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번역 : 2007.7 ~ 2008.2
- 분류체계 확정 및 잠정안 작성 : 2008. 3월경
- 설명문에 대한 해설서, 색인어 작성(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 2008년
- 설명문 및 색인어 작성을 위한 웹 포럼 및 전문가 회의 : 2008년  
- 이번에 참석한 고용자, 노동자 그룹도 웹포럼에 참가
- 분류체계 확정 및 유엔통계위원회 상정 : 2008. 3월경
- 센서스 적용 : 2010
- ※ 전문가회의와 관련하여 ILO에서는 2008.3월 중으로 모두 완료하여 유엔통계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였으나 작업이 지연되고 색인어, 설명문 등 후속작업에 따른 업무지속성 유지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연 2회씩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회원국에 참가 희망

#### V. 우리나라 향후 계획(KSCO-6)

- 우리나라는 국제분류 개정 확정 전에 이미 우리나라 분류를 개정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제분류와 상이한 직업들에 대한 색인어를 작성하고 하위단위별 연계표를 작성하여 직업 관련 통계의 국제비교와 국제기구에의 자료제공 필요

(붙임)

## 직업분류 개정 3자간 회의 및 ISCO/TEG 회의 아젠다

□ 2007. 12. 3(월)

10 :00 - 12: 30 : 오전세션

1. 환영사 및 개회식
2. 의장선출, 아젠타 채택
3. 회의자료에 대한 개괄적 설명 및 검토
4. ISCO-08의 개념 검토
5. ISCO-08 변경내용 검토
  - 변경이유
  - 분류체계 검토
  - 특수분류 검토
  -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브리핑

14 :30 - 17: 30 : 오후세션

1. 분류체계 세부 검토
  - 대분류 1 매니저, 고위관료 및 입법가
  - 대분류 2 전문가

□ 2007. 12. 4(화)

10:00 - 12: 30 오전 세션

1. 대분류 3 준전문가
2. 대분류 4 사무원

14 :30 - 17: 30 : 오후세션

1. 대분류 5 서비스 및 판매원
2. 대분류 6 숙련 농림어업 종사원

□ 2007. 12. 5(수)

10:00 - 12: 30 오전 세션

1. 대분류 7 기능원
2. 대분류 8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4 :30 - 17: 30 : 오후세션

1. 대분류 9 단순노무자
2. 대분류 0 군인

□ 2007. 12. 6(목)

10:00 - 12: 30 오전 세션

1. 결의문 작성

14 :30 - 17: 30 : 오후세션

1. 쟁점사항에 대한 재검토
2.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

□ 2007. 12. 7(금)

09:30 - 12: 30 오전 세션

1. 전문가 그룹에서 도출된 문제 토의
2. 개념 정의, 색인어 및 연계표에 대한 토의
3. 카테고리별 세부 정의 검토

14 :30 - 17: 30 : 오후세션

1. 직업 타이틀의 영어, 불어,스페인어 작성을 위한 토의
2. 국가분류 개발 및 ISCO-08 적용을 위한 방안
3. 전문가 그룹의 향후 계획